
정책참고자료

2019-1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지자체의 지역일자리 사업 자율성 강화 위해 머리를 맞대다	4
- '지역일자리 사업 자율성 확대 전담조직', 3일 기획회의 개최 -	

2 국민권익위원회

60여년간 해결 못한 강원 양구군 해안면 (일명 편치불 마을) '무주지 문제' 풀린다	5
- 26일 1차 현장조정회의서 관계기관간 해결방향 중재 -	

3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전국 기업 현장으로 찾아가 '19년 지원사업을 알린다	9
- '19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1.8~2.15, 300회) -	

4 교육부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미리 챙겨 돌봄공백 해소	14
- 돌봄교실 1,400실 확충으로 이용학생이 약 28만 명으로 늘어날 듯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적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가 아이디어 발굴(1.4~1.25)	17
- 기후기술 전문가 대토론회(2.20)에서 발표 및 토론 -	

6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2018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
-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 23.8%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증가, 10년 전(2009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	

7 농림축산식품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1.1만여 톤 수거로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 노력	26
- 농식품부,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 6주간 추진 -	

8 환경부

생물다양성의 보고 습지가 사라지고 있다

- 최근 3년간 전국 습지 조사결과...74곳 소실 91곳 면적 감소 -

30

9 고용노동부

겨울철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장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개정 -

39

10 여성가족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현장 관계자 의견 듣는다.

-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 방문 -

46

1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방지를 위해 정부, 지자체 적극 나선다.

- 상생협약 표준안 고시 및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 확정, 상반기 조성 착수 -

51

12 해양수산부

우리바다의 모든 해양수산생물 한눈에 본다

- 해수부, '2018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 발간... 총 13,356종 수록 -

59

지자체의 지역일자리 사업 자율성 강화 위해 머리를 맞대다

- '지역일자리 사업 자율성 확대 전담조직' , 3일 기획회의 개최 -

- 지역 일자리 사업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9차 일자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성된 '지역일자리 사업 자율성 확대 전담조직(TF)'이 3일 기획회의(키오프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일자리 사업들의 지역 자율성 확대 방안과 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며, 그 결과는 지역일자리 책임관 회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차관(윤종인)이 주재하고,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일자리위원회일자리 담당 실·국장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폭 넓은 지역 일자리 사업 자율성 확대가 체감도 높은 경제 활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60여년간 해결 못한 강원 양구군 해안면 [일명 편치볼 마을] ‘무주지 문제’ 풀린다

- 26일 1차 현장조정회의서 관계기관간 해결방향 중재 -

- 6·25전쟁때 수복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지역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무주지*의 소유권 문제가 60여년 만에 해결될 전망이다.

* 무주지란 누구에게도 속하는 땅으로 주인 없는 땅을 말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정부의 수복지역 이주정책으로 이주한 양구군 해안면 이주민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개간한 무주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도출했다.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일명 ‘편치볼마을’)은 1945년 해방이후 이북 관할지역으로 있다가 6.25전쟁때 수복되면서 원주민 대부분이 북한으로 피난을 갔다. 휴전 이후 정부는 수복지역 관리를 위해 1956년과 1972년 2차에 걸쳐 정책이주를 실행해 재건촌을 조성하고 이주민들에게 토지와 경작권을 부여하면서 일정기간 경작시 소유권을 부여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국내 개별법 한계로 북한으로 피난 간 원주민의 토지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주민들은 장기간 소유권이 없이 경작만

해왔다.

- 정부는 1983년 7월에「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일부 토지는 국유화했다. 그러나 3,429필지에 달하는 토지는 여전히 무주지로 남아 경작권 불법매매, 국유지 임차인과 무주지 경작자간 갈등, 민통선 내 군작전 지역 관리애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6년 9월에 강원도 안보 및 민생행보 중에 해안면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무주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했고,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여러 차례 해결을 시도했으나 국내법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었다.

문제해결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양구향토문화연구소장인 김규호 등 564명의 주민들은 정부의 이주정책에 따라 이주하여 불모지를 개간하고 오늘날의 옥토로 가꾼 노력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들은 정부가 무주지를 보상차원에서 이주민들에게 매각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2017년 9월에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8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팀을 지난 8월 구성하여 수차에 걸친 실무협의와 현장방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열었다. 그 결과 우선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무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책이주민 현황 등 경작민들의

거주 유형을 면밀히 분석한 후 차등 매각 등의 세부매각 기준을 마련하고 3차례에 걸친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26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신청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산림청, 양구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1차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문제 해결의 큰 방향을 담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1차 조정안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인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는 국유화 이후 보상적 차원에서 경작민들에게 매각된다. 또한 이 지역을 점경 지역으로서 평화와 화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정안에 따라 기재부는 무주지 국유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국방부는 해안면 군사보호구역 완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점경지역 발전 지원업무 주관부처로서 다른 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위해 간접적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농축산부는 특별조치법 제정 등 농지 소유권 생성과 변동에 대해 농지법 위반사항 여부를 검토해 협력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해안면 무주지 지적공부 등록 및 관리를 하고 조달청은 특별조치법 제.개정이 완료되면 신속히 국유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국유화 된 무주지의 대부.

매각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양구군은 해당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등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접경지역 무주지 문제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남북 화해라는 시대상황과 이주민들의 오랜 고충을 생각해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기부, 전국 기업 현장으로 찾아가 '19년 지원사업을 알린다

- '19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1.8~2.15, 300회) -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9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1월 8일(화)부터 2월 15일(금)까지 전국에서 총 300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 * 설명회 일정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보도자료 게시판 및 기업마당 홈페이지(<http://www.bizinfo.go.kr>)에 게재
 - 사업설명회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정책수요자가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기업 상담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 * 지방청이 정책수요자(중소기업, 소상공인)가 희망하는 현장(산업단지, 대학,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여 지원사업을 설명
 - 또한,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정책고객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 지자체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인 중진공, 신·기보, KOTRA 등과 협업하여 합동으로 진행하며, 지원사업 상담코너를 별도로 운영하여 사업신청이나 세부적인 지원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

- 설명회는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설명회와 창업기업, 소상공인 등 정책자별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특히, 금년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우선적으로 1월 8일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설명회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를 한 후 ‘기업마당’ 홈페이지에 상시 방영을 하며
 - * (중계일시) 2019.1.8(화), 14:00,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
- 1월 3째주 부터는 주요 사업별 동영상을 제작하여 기업마당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 설명회 관련 자료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추가적으로 설명회를 희망하는 정책수요자(기관·단체 등)는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고 :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2. 지방청별 설명회 개최일정

참고1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기 관 명	전 화	주소 및 홈페이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www.mss.go.kr/site/seoul/main.do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0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www.mss.go.kr/site/busan/main.do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0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www.mss.go.kr/site/daegu/main.do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13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www.mss.go.kr/site/gwangju/main.do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1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www.mss.go.kr/site/gyeonggi/main.do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www.mss.go.kr/site/incheon/main.do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www.mss.go.kr/site/daejeon/main.do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06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www.mss.go.kr/site/ulsan/main.do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1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www.mss.go.kr/site/gangwon/main.do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25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www.mss.go.kr/site/chungbuk/main.do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www.mss.go.kr/site/jeonbuk/main.do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17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www.mss.go.kr/site/gyeongnam/main.do

참고2

지방청별 설명회 개최일정

구분	일시	장소	주요내용	참석대상
강원	1.08(화) 14:00	강원청 대회의실	설명회, 상담창 구 운영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 인
강원	1.09(수) 14:00	강원청 대회의실	소상공인지원사 업 안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강원	1.09(수) 14:00	강릉원주대	설명회, 상담창 구 운영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 인
강원	1.11(금) 13:00	태백 철암농공단지	설명회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 인
강원	1.14(월) 14:00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R&D 지원사업 안내, 상담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 인
강원	1.15(화) 15:00	삼척시청	설명회, 상담창 구 운영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 인
강원	1.15(화) 14:00	강원도 경제진흥원 소회의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안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강원	1.16(수) 13:00	동해시 BI	설명회	창업기업
강원	1.16(수) 14:00	강원청 대회의실	전통시장 지원 사업 설명	전통시장
강원	1.17(목) 14:00	강릉과학산업진흥원 2층 중회의실	설명회, 상담창 구 운영	수출기업
강원	1.17(목) 14:00	강릉상공회의소 회의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안내	소상공인
강원	1.18(금) 14:00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R&D 지원사업 안내, 상담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 인
강원	1.18(금) 14:00	강릉상공회의소	설명회, 상담창 구 운영	소상공인
강원	1.21(월) 16:00	강원도경제진흥원	R&D 지원사업 안내, 상담	수출기업
강원	1.21(월) 14:00	강원도경제진흥원 6층 대회의실	설명회, 상담창 구 운영	수출기업
강원	1.21(월) 13:00	양양 포월농공단지	설명회	중소기업
강원	1.22(화) 14:00	동해시청 대회의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안내	소상공인
강원	1.22(화) 15:00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	R&D 지원사업 안내, 상담	바이오기업
강원	1.22(화) 14:00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3동 2층 대회의실	설명회, 상담창 구 운영	수출기업
강원	1.23(수) 14:00	강원도립대 BI	설명회	창업기업
강원	1.25(금) 14:00	가톨릭관동대 BI	설명회	창업기업

구분	일시	장소	주요내용	참석대상
강원	1.29(화) 13:30	속초시청	설명회, 상담창 구 운영	소상공인
강원	1.30(수) 11:00	고성군청	설명회, 상담창 구 운영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 인
강원	1.30(수) 14:00	한라대학교	R&D 지원사업 안내, 상담	창업기업
강원	1.31(목) 14:00	한림대학교	R&D 지원사업 안내, 상담	창업기업

* 지역별 설명회 개최일정은 현재까지 결정된 일정이며 일부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변경 및 추가내용은 각 지역 지방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미리 챙겨 돌봄공백 해소

- 돌봄교실 1,400실 확충으로 이용학생이 약 28만 명으로 늘어날 듯 -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2019학년도 신학기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우선, 국고 예산을 지원하여 초등돌봄교실 총 1,400실을 확충함에 따라 작년보다 2만여 명이 증가한 약 28만 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신학기 시작 전 겨울방학 기간에 집중 확충하여 신학기에 1,200여 실을 증설·운영하고, 석면공사 등으로 3월 개소가 어려운 일부 학교는 2학기를 전후하여 200여 실을 추가로 증설할 예정이다.

【'19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증설·확충 계획(안)】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증설교실 수	301	31	89	167	2	109	11	27	293	22	27	12	27	10	60	15	15	1,218

※ '18. 12월까지 기 확충한 77실을 포함한 수치임

- 또한, 시·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을 활용하여 기존 겸용 돌봄교실 190실을 전용교실로 전환하고, 노후한 돌봄교실 1,354실에 대한 새단장 작업 등 총 1,620실의 돌봄교실에 대한 환경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 KB금융그룹 기부금을 활용, 368개교 671실을 혁신적 리모델링 병행 추진(기존 돌봄교실 포함)

□ 이번에 확충·개선하는 돌봄교실은 학생들이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놀이와 쉬이 어우러져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감성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 디자인 설계과정에 공간을 실제 이용하는 수요자(학생, 돌봄전담사, 교사 등)를 참여시켜 공간 구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 추진한다.

※ 예) 학생이 좋아하는 색채, 원하는 교구, 재미난 공간 구성 등을 공유하기 위한 의견수렴 등 진행

✦ 초등돌봄교실 확충 및 환경개선 사례 ✦

(서울) '19년부터 기존 1~2학년 중심에서 3학년까지 확대, '20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예정

(인천) 돌봄교실 대기자 없음을 목표로, 1~2학년은 돌봄교실을 증설하고, 3~6학년은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1교당 1실 이상 의무 운영

(경기) 3학년 중심, 1~2학년 대기학생 중 희망학생 돌봄수요에 대비하여 상시적 놀이

중심 공간으로 구축·운영



□ 아울러,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시·도교육청별 신학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지원할 계획이며,

- 교육청·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돌봄 관련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돌봄교실 시설 확충 진행상황 등을 점검·지원하기 위해 현장점검반 및 민원담당관제*를 3월까지 상시 체제로 구성·운영하고,

- 학교가 돌봄교실 신청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을돌봄**과 연계하는 등 돌봄수요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 * 교육(지원)청 국(과)장을 반장 또는 담당관으로 전담팀 구성·운영
-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 지역별 돌봄지도를 방과후학교 누리집(www.afterschool.go.kr)에 탑재·안내 ('18.12월 ~)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교 현장과 함께 돌봄교실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나 매년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신학기 돌봄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돌봄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 “초등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마을)과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므로 올해 출범한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유도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혁신적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가 아이디어 발굴(1.4 ~ 1.25)

- 기후기술 전문가 대토론회(2.20)에서 발표 및 토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4일(금)~25일(금) 3주간,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해 전문가 대상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수요조사는 겨울에는 폭한, 여름에는 폭염 등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에너지/환경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도전적인 과학기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수요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가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 기후변화 적응(환경) 분야 등 기후기술 연구개발(R&D) 주제에 대해 한국연구재단 '기획마루' 홈페이지에 수요 조사서를 제출하면 된다.

○ 한국연구재단 기획마루 홈페이지 : <https://plan.nrf.re.kr>

- 대상 : 대학 교원(전임, 비전임), 공공 민간 연구소 연구원, 기후기술 R&D 분야 박사 등 산학연 전문가
- 기간 : '19. 1. 4.(금)~1. 25.(금), 3주간

- 전문가들이 제안한 연구주제들은 2월 20일(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리는 기후기술 전문가 대토론회에

서 발표·논의 될 예정이다.

※ 기후기술 연구개발 내용 유사성, 접수 건수에 따라 발표 여부는 변경 가능

- 토론회는 우선, 그간의 기후기술 연구개발(R&D) 현황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과학기술적 대안들을 다른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 과기정통부는 토론회에서 논의한 과학적 대안들을 향후 기후기술 R&D 신규 사업 기획 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2009년부터 추진해오던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사업이 2020년 일몰사업으로 점차 종료됨에 따라 연구자 의견 수렴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기획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상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여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그간 기후기술대전(2017년, 2018년)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을 높여왔던 것에 이어, 올해는 산·학·연 전문가와의 활발한 소통 창구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번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과학기술 기반 기후변화 대응기술 R&D 발굴 논의의 장

대한민국 기후기술

R&D 아이디어 발굴 전문가 대토론회

R&D 아이디어 모집기간

2019. 1. 4(금)~1. 25(금)


| 개요 |

과학기술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해법 마련을 위해
기후기술 R&D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

| 참여방법 |

기후기술 R&D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선정된 아이디어는
대토론회에서 제안자가 발표

| 제안대상 주제 |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도전적인
기후기술 R&D 아이디어

| 참여대상 |

대학, 공공·민간 연구소, 기업 등 기후기술
관련 분야 전문가

| 제출방법 |

한국연구재단 기획마루 홈페이지(<https://plan.nrf.re.kr>)에
R&D 아이디어 제안서 제출

| 향후일정 |

1. 4 ~ 1. 25 : 기후기술 R&D 아이디어 온라인 접수
1. 28 ~ 2. 1 : 제안 아이디어 검토·우수 아이디어 선정
2. 20(수) : 대한민국 기후기술 전문가 대토론회 개최
*선정된 우수 제안은 제안자가 대토론회에서 공개 발표

| 활용계획 |

논의된 아이디어는 향후 정부 기후기술 R&D 사업계획시 활용 예정

| 문의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협력팀(02-3420-1311, 13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CI ST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문체부, 2018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 23.8%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증가,
10년 전(2009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전국 등록 재가(在家) 장애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의 우리나라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은 23.8%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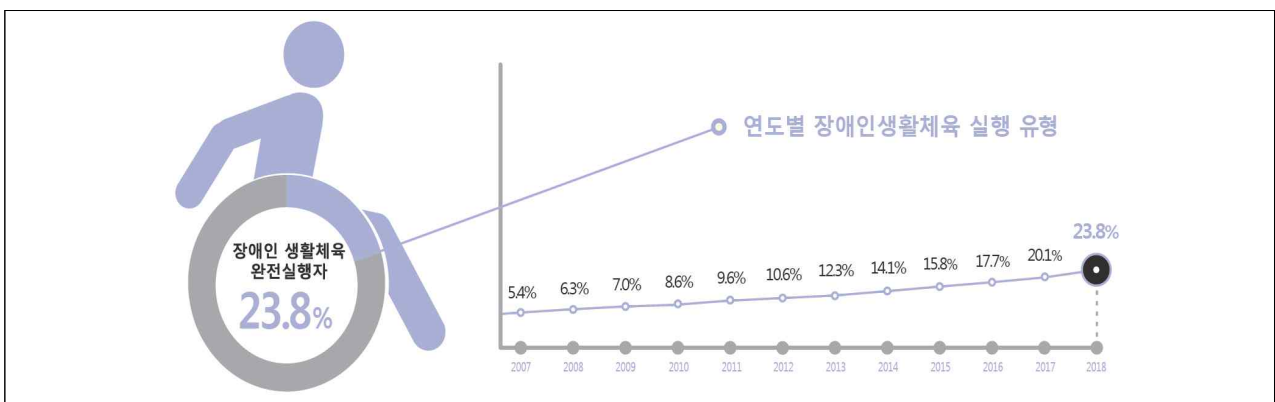
※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개요

- (조사목적) 장애인 생활체육의 참여 현황, 체육시설, 참여 시 애로사항 등 실태와 현황을 파악해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조사 모집단) 전국 만 10세 이상 69세 미만 등록 재가장애인(2017년 말 기준 1,641,743 명)
- (조사 표본) 5,000명(15개 장애영역을 체육활동 기준으로 6개로 재분류)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자폐, 기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2회 이상(1회당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장애인은 23.8%로 2017년 대비 3.7%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9년(7.0%)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그림 1>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연도별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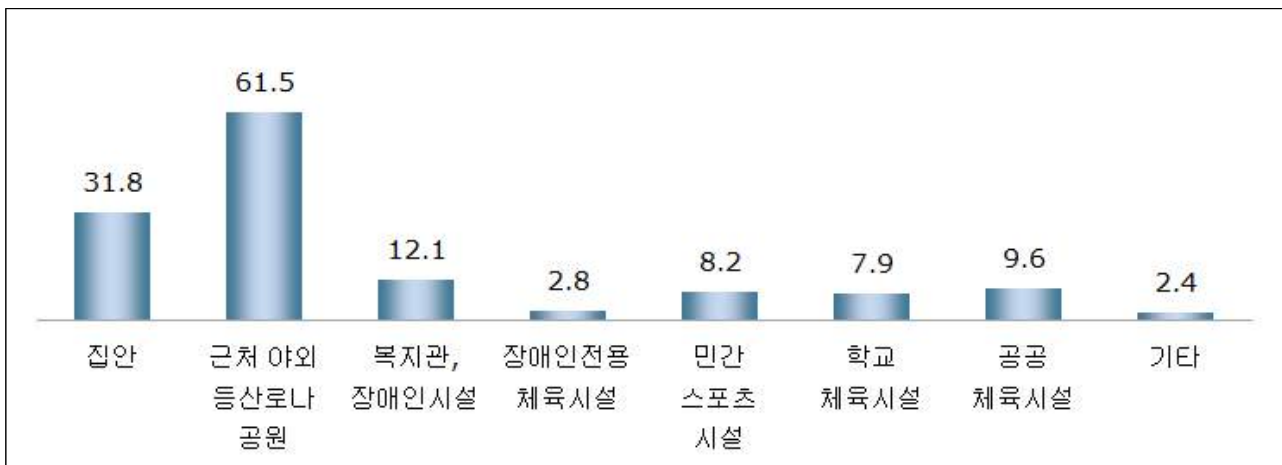


거리가 가까운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 ‘집 안’을 주로 이용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장소)은 ▲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61.5%), ▲ ‘집 안’(31.8%), ▲ ‘장애인 체육시설(복지관 시설) 및 장애인 전용체육시설’(14.9%), ▲ ‘공공체육시설’(9.6%) 순으로 조사됐다.[복수응답]

<그림 2>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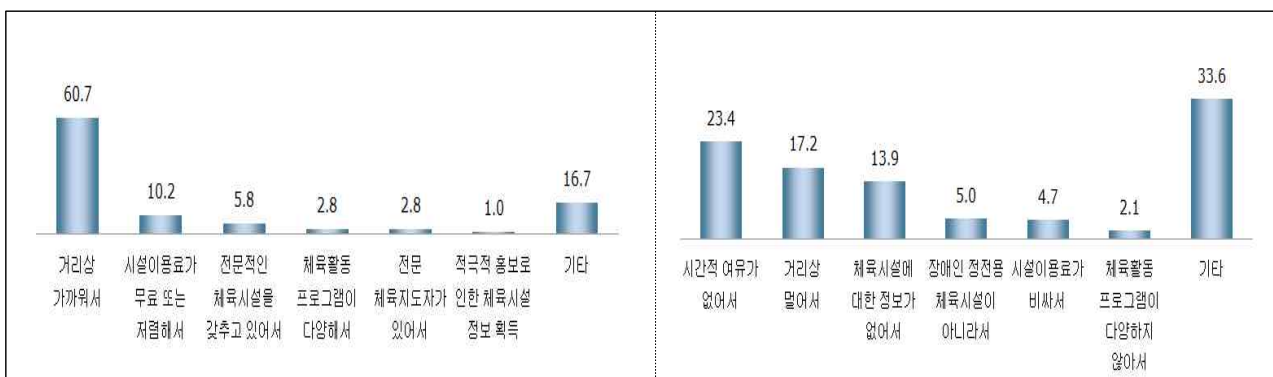
(단위: %)



장애인이 주변 체육시설(장소)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리상 가까워서’(60.7%)였고, 주변 체육시설(장소)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23.4%), ▲ ‘거리상 멀어서’(2위, 17.2%), ▲ ‘정보 부족’(3위, 13.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3>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유/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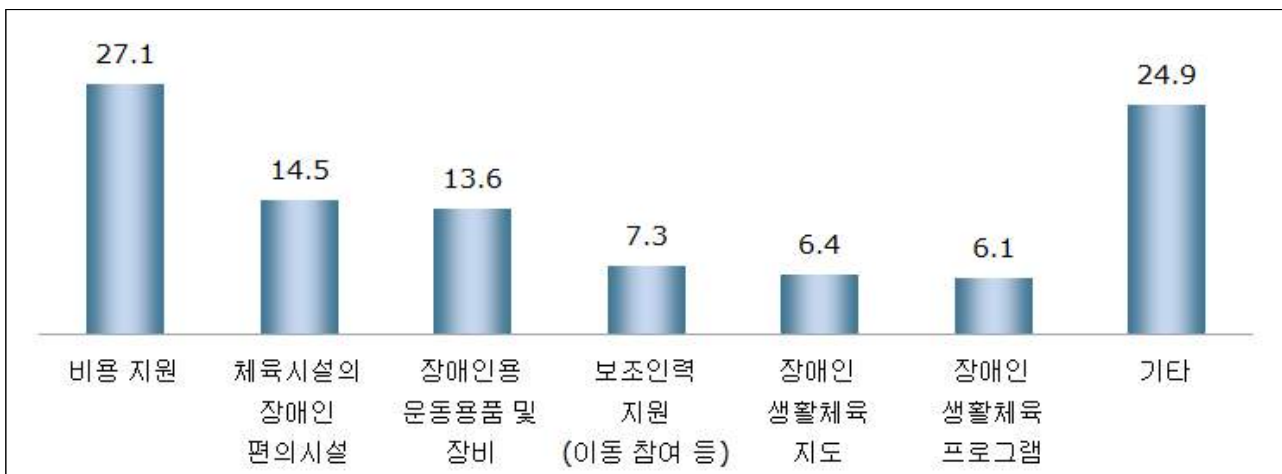


운동 경험자 중 27.1%가 가장 중요한 보완점으로 비용 지원 선택

운동 시 가장 중요한 보완점으로는 ▲ 비용 지원(27.1%)을 선택하였으며, ▲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14.5%), ▲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13.6%), ▲ 보조 인력 지원(7.3%) 등을 그 다음 보완점으로 꼽았다. 특히, ‘비용 지원’의 경우 ‘17년(24.8%) 대비 2.3%포인트(p)가 증가해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비용 부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4> (운동경험자) 운동 시 보완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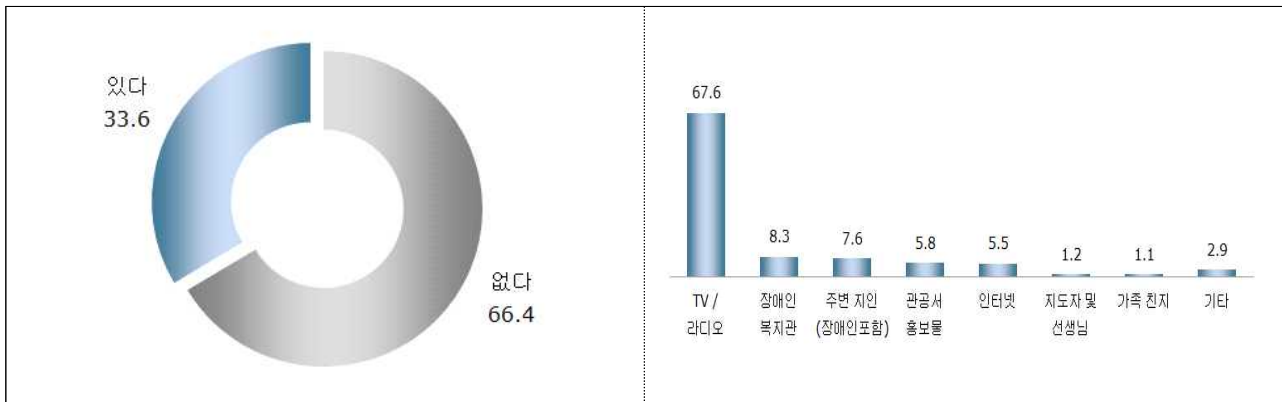
장애인 생활체육 정보 습득 경험 33.6%에 불과, 습득경로 텔레비전/라디오 67.6%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정보를 습득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33.6%만이 습득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전년 대비 3%포인트(p)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관련 정보 습득 경로는 ▲ ‘텔레비전(TV)/라디오’(67.6%), ▲ ‘장애인 복지관’(8.3%), ▲ ‘주변 지인(장애인 포함)’(7.6%) 등의 순으로 나타나, 텔레비전(TV)/라디오에 편중된 양상을 보였다.

<그림 5>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정보 습득 경험/습득 경로

(단위: %)



생활체육 전문 지도를 받은 경험 7.3%로 낮아

생활체육 전문지도자로부터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3% [전년(6.7%) 대비 0.6%포인트(p) 증가]로, 생활체육 전문지도자로부터 지도를 받은 적이 있는 장애인의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조사 결과와 2018년 8월에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장애인이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장애인 생활체육 정책 홍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육성과 배치 확대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문체부 누리집 (www.mcst.go.kr)과 대한장애인체육회 누리집(www.koreanpc.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붙임 2019 장애인 생활체육 주요 사업

□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강화

-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기초 단위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 시설(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원('19년 신규 30개소)
 - ※ 체육관형·수영장형·종목특화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자체 수요에 맞게 건립 지원, 장애인 우선 이용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
- (기존 시설 이용 확대) 장애인 우선사용(장애인 배려공간 지정 및 우선대관) 추진, 편의시설 개보수 확대, 장애인 친화 체육시설 인증 추진
-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확충) 장애인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등을 위한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확대('18년 3개소 → '19년 6개소)

□ 장애인 맞춤형 생활체육 서비스 확대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도입) 저소득층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실시('19년 신규)
 - * 원활한 도입 및 정착을 위해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5,100명 대상) 병행 추진
-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의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의 시·군·구 단위 밀착 배치('18년 577명 → '19년 800명) 및 역량강화 교육 확대, 처우개선 추진
- (프로그램 지원 확대) 맞춤형 교실·동호회 지원* 확대, 장애인형 공공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실시('19년 3개소), 경기용 휠체어 등 장애인 생활 체육용품 및 시·도별 특장차량 지원(특장버스 4대, 특장승합차량 6대)
 - *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직장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상특화형 생활체육교실 지원

□ 장애인 체육 홍보 강화 및 인식 개선

- (전문 인터넷TV 운영) 'KPC-TV'를 운영('19년 신규)하여 장애인스포츠 중계를 통해 접근 기회 확대 및 인식 개선 도모

* KPC-TV : 장애인 전국규모 대회 및 주요 경기를 중계하는 장애인 스포츠중계 플랫폼

- (통합체육 확대) 통합체육 프로그램 개설 지원, 통합체육 연구학교 지원('19년 4개소), 통합체육 매뉴얼 개정 추진

페비닐 등 영농폐기물 1.1만여 톤 수거로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 노력

- 농식품부,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 6주간 추진 -

《 주 요 내 용 》

◇ 추진배경

-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영농 후 페비닐, 빈농약병 등 농자재 미수거 문제 발생, 환경오염 및 농촌다움 훼손
 - * 연평균 약 7만 톤의 영농페비닐, 약 1,500만 개의 폐농약용기 미수거
- '18년 범정부 계층별·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 추진

◇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

- (목적) 농촌 내 방치된 영농폐기물의 집중수거를 통한 환경개선
- (내용) 84개 시·군 대상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인력 4,980명 운영
 - * 84개 시·군: 부산(1), 인천(2), 울산(1), 경기(3), 강원(11), 충북(8), 충남(7), 전북(8), 전남(20), 경북(13), 경남(10)
- (기간) '18. 11 ~ 12월 내 6주 간 실시

◇ 추진성과

- 84개 시·군 내 영농페비닐, 폐농약 등 영농폐기물 총 11,100톤 수거
- 농촌 내 맞춤형 단기일자리 5,564명 창출 * 목표 대비 약 112% 달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6주간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을 집중 추진해 8,978개 농촌 마을에서 폐비닐·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약 11,100톤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은 범정부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84개 시·군에서 총 5,564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해 작물 재배 후 멀칭용으로 사용되었던 폐비닐이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논·밭에서 방치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 멀칭용 폐비닐은 흙과 수분 등 이물질과 함께 수거되기 때문에 그 무게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농장에서 마을 집하장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트럭 등의 운송 수단이 필요하다.

○ 하지만, 고령 농업인들의 경우 그 무게와 운송 수단 부재로 인해 농장에서 쉽게 수거를 하지 못하고 논·밭에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영농부산물과 영농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소각산불 발생이 전체 산불 발생건수의 30~40% 차지(산림청)

□ 실제로, 농촌에서는 매년 약 32만 톤의 영농폐비닐이 발생하지만, 79%인 25만 톤 정도가 수거되고 약 7만 톤의 영농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있다.

○ 폐농약용기의 경우에도 연간 약 7,200만 개가 발생하나, 79%인 5,700만 개 정도 수거되고 약 1,500만 개의 폐농약용기는 수거되지 않고 있다.

□ 금번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은 농촌의 환경과 인력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 논·밭 및 마을공터, 야산 등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폐영농자재 등에 대해 집중 수거를 추진한 사업이다.

○ 각 시·군에서는 활동단위별로 팀을 구성하여 마을을 순회하며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이를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 수거작업은 마을별 이장들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수거 마을 순서와 일자를 결정하고, 수거 대상 논·밭 등 작업구역을 미리 선정한 후 수거를 실시하였으며,

○ 1개 팀이 주간 평균 2~4개 마을을 돌며, 고령 농가와 여성 경영주 농가 등 자율적 수거 작업 수행이 힘든 농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거를 실시하였다.

□ 금번 사업을 통해 수거한 물량은 영농폐비닐 7,489톤, 폐농약 용기 330톤(약 660만 개), 반사필름, 부직포 등 기타 폐영농 자재 3,281톤으로 영농폐기물 총 11,110톤을 수거하였으며,

○ 영농폐비닐의 경우 연간 미수거 물량의 약 10.6%, 폐농약용기는 연간 미수거물량의 약 44%를 집중 수거하였다.

□ 일선 시·군 담당자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을 지원할 뿐 아니라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예방에도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며,

○ 현장의 농업인들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이에, 농식품부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 현장



생물다양성의 보고, 습지가 사라지고 있다

- 최근 3년간 전국 습지 조사결과...74곳 소실, 91곳 면적 감소 -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와 최근 3년간 전국의 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74곳의 습지가 소실되고 91곳은 면적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 결과는 국립습지센터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진행한 제2차 전국내륙습지 기초조사사업 중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 국립습지센터에서는 국가습지현황정보 목록에 등록된 2,499곳의 습지 중 총 1,408곳의 습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 전국내륙습지 기초조사사업은 5년 단위로 전국의 내륙습지를 대상으로 습지의 소실 여부와 습지 경계 및 주요 생물종 변화 등 내륙습지의 이력관리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 소실된 습지 74곳을 지역적으로 나눠보면, 경기 23곳, 충청 21곳, 강원 13곳, 전라 12곳, 제주 3곳, 경상 2곳으로 확인되었다.
- 면적이 감소된 습지 91곳은 전라 52곳, 경기 19곳, 경상 12곳, 강원 8곳 순이었다.
- 이번 조사에서 훼손이 확인된 165곳의 습지 중 90%(148곳)는 논, 밭, 과수원 등 경작지로 이용하거나, 도로와 같은 시설물 건축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훼손으로 밝혀졌다.

- 습지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초지나 산림으로 변한 경우는 10% (17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예를 들어,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문호천 수대울 하천습지의 경우 2013년에는 원시 자연적인 상태로 잘 보전되어 있었으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하천정비 사업 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환경부는 이번 습지조사를 계기로 습지보전정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 이번 조사를 통해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총 45곳)으로 지정되지 않은 내륙습지 대부분이 무분별한 개발압력에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 우선,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사업부지에 습지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중점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습지 훼손을 최소화한다.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신규 습지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습지 총량제와 같이 습지의 훼손을 근본적으로 사전예방하기 위해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자연자원총량제는 개발사업 전·후의 습지 등 자연자원 총량의 변화를 산정·평가하여 훼손된 총량만큼 사업지 내·외에 상쇄 또는 대체하거나, 보상이 어려울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복원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일종의 ‘생태가계부’라 할 수 있다.

※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은 국정과제의 하나이며, 현재 제도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및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 중

- 이 밖에도 습지의 가치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즉 습지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정책결정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특히,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지역주민 등의 친환경적 행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현재 생태계서비스 제도도입을 위해 ‘생물다양성법’ 개정과 함께 경북 문경시 돌리네습지를 대상으로 습지보호에 적합한 영농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금을 지불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

-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인간에게 수자원 공급, 온실가스 흡수, 경관과 문화적 가치 창출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공간이다”라면서, “미래 세대에게 이러한 습지의 다양한 혜택을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밝혔다.

- 붙임 1. 훼손 습지 165곳 상세 자료.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 1

훼손 습지 165곳 상세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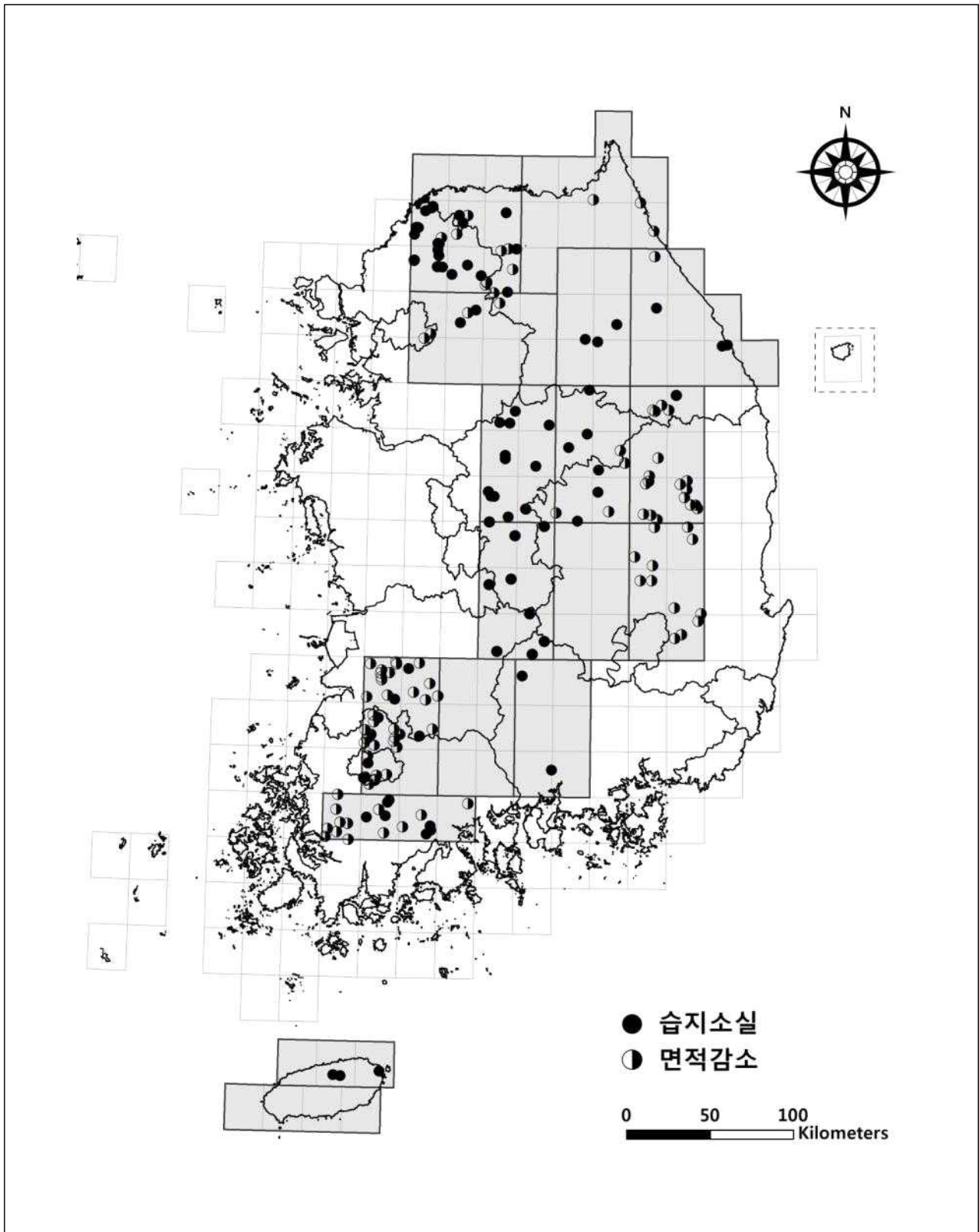
□ 조사연도별 습지 훼손 상세현황 목록

조사 연도	훼손 유형		훼손 요인	
	소 실	면적 감소	자연적 요인	인위적 요인
합계	74	91	17	148
2016	20	5	11	14
2017	20	42	2	60
2018	34	44	4	74

□ 소실 습지 74곳 상세 원인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개소	비율 (%)	비고
자연적	천이	육화	13	17.6	산림 및 육상식생으로 천이
		초지	4	5.4	초지식생으로 천이
		소계	17	23.0	
인위적	경작	논, 밭, 과수원	29	39.2	경작(논, 밭, 과수원)
	개발	나지화	2	2.7	매립 후 방치
		시설 입지	20	27.0	산업단지, 택지, 골프장 조성
		댐건설	1	1.4	수위상승에 따른 매몰
	복합	경작 및 개발	5	6.8	경작 및 택지조성 복합이용
	소계		57	77.0	
합 계			74	100	

□ 훼손습지 위치도



□ 주요 훼손습지의 훼손 전후 비교

○ 승안습지(경기도 가평군 승안리 소재)



○ 수대울 하천 습지(경기도 양평군 소재)



1. 습지조사는 어떻게 진행 되나?

- 전국에 있는 습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습지를 발굴하는 기초조사와 학술적 혹은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우수한 습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밀조사로 구분됩니다.
- 기초조사는 무생물분야(지형 및 수문현황을 통한 유형분류), 생물분야(식생현황을 통한 경계 및 범위설정), 인문·사회 환경분야(주변 사회 환경 파악), 습지평가분야(습지가치등급 부여) 등 4개 항목을 조사하며,
- 정밀조사는 지형(지질)·퇴적물, 수리(수문), 식생, 식물상, 육상곤충,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양서·파충류, 어류, 조류, 포유류, 동·식물 플랑크톤 등 11개 항목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2. 새로운 습지는 어떻게 발굴하나?

- 지형 및 식생분야의 전문가가 한 조가 되어 습지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지도상에서 먼저 추출하고, 이후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현장 조사를 통해 무생물환경(지형·지질·퇴적물), 생물환경(식생)을 파악하고 국가습지현황정보 목록에 반영여부를 판단한 뒤, 최종적으로 습지의 경계를 확정하게 됩니다.

3. 미국과 캐나다의 습지총량제 주요 내용

- 미국의 습지총량제
 - 개발사업 신청·접수시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습지의 손상(훼손) 방지를 원칙으로 개발사업으로부터 습지의 소실 및 훼손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제도

- 손상실 방지가 불가피함에도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습지 개발자로 하여금 상실되는 습지의 면적과 그 가치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훼손된 원습지를 복원 또는 대체습지를 조성하도록 함
- 대체습지를 조성할 경우, 훼손된 습지 면적의 약 1.4배 이상을 조성하여야 하며, 동일 지역 내(40마일 이내 or 동일 소유역권)에 동일한 기능과 유형의 습지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적지 선정의 어려움, 지역간 분쟁 등 대체습지를 조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습지은행으로부터 습지권(credit)을 구매하거나 일정 금액을 대체납부금으로 납부함으로써 보상 조치를 완료시키는 대체납부금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미국의 습지총량제 시행단계>

단계		내 용
1단계	회피 (Avoid)	•어떤 행위나 행위의 일부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개발에 따른 영향을 모두 회피
2단계	최소화 (Minimize)	•어떤 행위나 이행의 정도 및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3단계	수정 (Rectify)	•영향 받은 환경을 수리 또는 회복시키거나 복원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영향을 수정
4단계	감소 또는 제거 (Reduce or Eliminate)	•행위기간 동안에 보전과 관리 작업을 일정기간 시행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영향을 감소 또는 제거
5단계	보상 (Compensate)	•대체자원 또는 대체습지를 조성하거나 대체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영향을 보상

□ 캐나다의 습지총량제

- 미국과 유사하며, 회피, 최소화, 보상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캐나다의 습지총량제 시행단계>

단계		내 용
1단계	회피 (Avoid)	•어떤 행위나 행위의 일부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개발에 따른 영향을 모두 회피
2단계	최소화 (Minimize)	•습지개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3단계	보상 (Compensate)	•피할 수 없는 습지개발로 인한 영향에 대한 보상

- (습지) 담수(민물), 기수(민물과 바닷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말함(습지보전법 제2조제1호)
 -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못·늪 또는 하구 등의 지역이고, 연안습지는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임
 - * (람사르협약상 습지 정의) 자연적·영구적·일시적으로 물이 정체하고 있거나 흐르고 있는 지역으로 담수·기수·염수를 포함하며, 소택지·저층습지·저층습원 및 수역을 말함(간조 때 수위선에서 수심 6m까지는 연안습지로 봄)
- (국가습지현황정보) 우리나라 전역에 산재해 있는 내륙습지의 목록으로, 개별 습지의 명칭, 주소, 위치(경위도 좌표), 면적, 습지유형, 주요 출현종, 경관사진 및 경계 등의 공간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기준으로 2,499개의 내륙습지가 등재되어 있음
- (자연자원총량)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연계하여 자연자원의 양과 질을 통합적으로 관리
 - 개발사업 전·후의 자연자원 총량을 산정·평가하여 훼손·감소되는 총량만큼 사업지 내·외에 보상(상쇄, 대체)하거나, 보상이 어려운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복원비용을 부담

겨울철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장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개정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의 사용가능한 항목을 확대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18.12.31.)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무더위 및 강추위에 사용하는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의 보호장구 구입비는 물론,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및 제빙기 임대비(6~10월 사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 아울러 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치료비와, 그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워크레인작업의 안전을 위한 신호·유도업무 하는 사람의 인건비, 소화기 구매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강추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 “이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를 계기로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고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안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94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일부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18. 12. 31.

고용노동부장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
용(중대재해 목적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제7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별표2 1항목제나목1)의나) 중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
우”를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

별표2 3항목제나목1)의 후단부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을 2)
로 이동하고, 3)은 삭제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별표2 6항목제거(2)의 본문에서 “제빙기”를 삭제하고 후단부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생략)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후단 신설)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u>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u>)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생략)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u>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u>

현행	개정안																
3. ~ 5. (생략)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table> <tr> <th>항 목</th><th>사 용 불 가 내 역</th></tr> <tr> <td>1. 안전관리 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 제1 항제1호 관 련)</td><td>가.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 3) 생략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생략 가) 생략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 용할 경우 <u>자재운반을 위한</u> <u>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u></td></tr> </table> <table> <tr> <th>항 목</th><th>사 용 불 가 내 역</th></tr> <tr> <td>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 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 제3호 관 련)</td><td>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 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후생적 근무여건 개선·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 에 소요되는 비용 가. (생략)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 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 갑 등 2)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 는 보냉·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 한다) 구입비 ※ 다만, 혹한·혹서에 장기간 노출 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td></tr> </table>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1. 안전관리 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 제1 항제1호 관 련)	가.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 3) 생략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생략 가) 생략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 용할 경우 <u>자재운반을 위한</u> <u>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u>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 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 제3호 관 련)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 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후생적 근무여건 개선·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 에 소요되는 비용 가. (생략)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 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 갑 등 2)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 는 보냉·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 한다) 구입비 ※ 다만, 혹한·혹서에 장기간 노출 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	<u>사용할 수 있다</u> 3. ~ 5. (생략)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table> <tr> <th>항 목</th><th>사 용 불 가 내 역</th></tr> <tr> <td>1. 안전관리 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 제1 항제1호 관 련)</td><td>가.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 3) 생략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생략 가) 생략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 용할 경우 <u>유도·신호업무만</u> <u>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u></td></tr> </table> <table> <tr> <th>항 목</th><th>사 용 불 가 내 역</th></tr> <tr> <td>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 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 제3호 관 련)</td><td>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 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후생적 근무여건 개선·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 에 소요되는 비용 가. (생략)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 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u>방한장갑</u>, 면 장갑, 코팅장갑 등 ※ 다만, <u>근로자의 건강장해 예 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 능함</u> <삭 제></td></tr> </table>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1. 안전관리 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 제1 항제1호 관 련)	가.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 3) 생략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생략 가) 생략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 용할 경우 <u>유도·신호업무만</u> <u>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u>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 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 제3호 관 련)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 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후생적 근무여건 개선·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 에 소요되는 비용 가. (생략)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 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u>방한장갑</u> , 면 장갑, 코팅장갑 등 ※ 다만, <u>근로자의 건강장해 예 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 능함</u> <삭 제>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1. 안전관리 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 제1 항제1호 관 련)	가.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 3) 생략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생략 가) 생략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 용할 경우 <u>자재운반을 위한</u> <u>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u>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 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 제3호 관 련)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 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후생적 근무여건 개선·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 에 소요되는 비용 가. (생략)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 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 갑 등 2)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 는 보냉·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 한다) 구입비 ※ 다만, 혹한·혹서에 장기간 노출 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1. 안전관리 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 제1 항제1호 관 련)	가.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 3) 생략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생략 가) 생략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 용할 경우 <u>유도·신호업무만</u> <u>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u>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 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 제3호 관 련)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 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후생적 근무여건 개선·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 에 소요되는 비용 가. (생략)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 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u>방한장갑</u> , 면 장갑, 코팅장갑 등 ※ 다만, <u>근로자의 건강장해 예 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 능함</u> <삭 제>																

현행		개정안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u>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함</u> 3) (생략)		2) 현행 3)과 같음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제7조 제1항제6호 관련)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생략) 1) (생략)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u>정수기·제빙기</u>,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u>비용</u>은 사용 가능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제7조 제1항제6호 관련)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생략) 1) (생략)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u>정수기·자외선차단용품</u>(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 <u>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u>은 사용 가능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현장 관계자 의견 듣는다.

-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 방문 -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월 10일(목) 오후 서울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 여건 개선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 올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되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중 ‘결혼이민자 통·번역 사업’과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상향됐다.

* 시급 8,350원, 작년대비 10.9% 인상

- 결혼이민자 통·번역 사업은 국내 체류 2년 이상 선배 결혼이주민들이 은행·병원 등에 동행하거나 전화·메일 등으로 통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등 전담인력이 센터별로 1~4명 배치되며 현재 전국 283명이 종사하고 있다.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은 다문화가족 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영·유아기부터 다문화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 가족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국어 이중언어코치 출신의 용○○씨와 러시아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이○○○씨 등 건강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등과 이야기를 나눈다.
- 진 장관은 올해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 사례관리사·언어발달지도사의 **근무일수 변화**(주4일제→ 주5일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의 **인력 확대** 등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개선사항**이 실질적으로 센터운영에 반영된 상황과 **근로현장 분위기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다.
- 진선미 장관은 “다문화가족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핵심 인력으로 점차 자리매김해가고 있으며, 이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이라고 강조하며,
-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들의 자녀 세대가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그만큼의 노고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간담회 개요

2. 통번역서비스 및 이중언어 환경 조성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최저임금 인상, 예산 증액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19년도 개선 사항 관련 현장 관계자 의견청취 및 격려

□ 개요

- 일시 : '19. 1. 10(목), 15:00~16:00
- 장소 :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재: 서울시 중구 퇴계로 460, 중구종합복지센터 10층)
- 참석자
 - (우리부) 장관, 가족정책관 등
 - (센 터) 센터장 및 종사자, 센터 이용자 등
 - ※ 결혼이민자 출신 센터 종사자, 다문화이해교육 봉사자, 몽골 자조모임 참가자 포함
 - (지자체) 서울시 및 중구 관계자

□ 주요 내용

- 센터종사자 및 센터 이용자 의견청취 및 격려

《 세부 일정 》

시간		내용	비고
~15:00		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착	
15:00~15:15	(15분)	센터 시설 라운딩	센터장
15:15~15:50	(35분)	참석자 소개 및 장관님 인사말씀	다문화가족과장
		센터소개 및 사업 설명	사무국장
		직원 및 이용자 간담회	다문화가족과장
15:50~16:00	(10분)	기념촬영 및 종사자 격려물품 전달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사업내용)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 결혼이민여성이 통·번역지원사로 활동
- (지원언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센터별 1~4개 언어
- (서비스 내용)
 -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차이 등 입국 초기 상담 통번역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국적·체류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 안내 통번역
 -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 정보 안내 및 상담내용 통번역
 - 교육과정 및 가족 간 의사소통 통역
 - 행정·사법 기관, 병원, 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 이용 시 통번역
 -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 통번역 등

□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

- (사업목적)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내에서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정서적 유대감 강화
- (사업대상)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미취학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사업 운영) 이중언어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 가족코칭 실시

영역	내용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 가정 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등 이중언어를 사용하여 놀이활동 프로그램 운영 • 동요·동화 등 교구 교재를 활용한 상호작용 코칭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	• 각국의 이주부모들 주체로 이중언어 사용 지지를 위한 부모지지체계 형성의 장 마련 •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방법 등을 공유
가족코칭	• 부모-자녀 상호작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0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초청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가족 구성원 전체 (배우자, 시부모 등)에 대한 코칭 실시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방지를 위해 정부, 지자체 적극 나선다.

- 상생협약 표준안 고시 및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 확정, 상반기 조성 착수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19년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상생협약(도시재생특별법 제27조의2)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 기간 조정, 이행시 우대조치 등을 내용으로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으로 표준고시는 '18.12.28일부터 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 상생협력상가 : 도시재생지역 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청년 스타트업,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조성한 상업용 건물

《 상생협약 표준 고시 》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그동안 맺어 온 상생협약들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약 표준안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약 위반시 위약금 등 제재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실행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우선,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 같이 상임법 수준보다 강화(임차인에게 유리한)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장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협약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 또한,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보조금 등의 전액과 이자)하고 위약금도 지급하도록 제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생사업 공모시 상가내몰림 예상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도 임대동향을 조사하여 우려 지역에서는 상생협약 체결 등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 상생협력상가 조성 》

-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가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적극 공급하기로 하고, 상가 조성, 입주자 선정,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9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성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상생협력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조성하여 장기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업시설로서 도시재생 사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상가 내몰림'을 미연에 방지함과 아울러, 빈집, 빈 점포 등 유휴 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운영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상생협력상가의 조성방식과 관련해서는,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지역에 상생협력상가 조성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상지 특성 및 사업방식에 따라 매입형(건물 리모델링)과 건설형(신축)중에서 조성방식을 선택한다.

- 매입형은 저층시가지내 빈집, 빈 점포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용도 전환하여 조성하는 방식이고, 건설형은 유휴 국.공유지, 공공기관 보유토지 등을 활용하여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 재원은 정부 재정(도시재생뉴딜 사업비), 주택도시기금(수요자중심형 용자상품), 지자체 자체사업비, 공공기관 자금 등을 다양하게 활용 하도록 할 계획이다.

○ 둘째, 상생협력상가의 입주자 선정방식과 관련해서는

- 국토부가 입주대상, 입주기간, 임대료 등에 대해서 표준안을 마련 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하게 된다.
- 지자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조성취지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배려대상(자활기업, 장애인기업) 등을 우선 선정하고, 최대 10년까지 저렴(주변시세(감정가)의 80%이하)하게 임대 하게 된다.
- 또한,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재생사업지역 주변 상권 과의 조화, 상가내몰림 피해정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 선정기준을 근거로 입주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 셋째, 상생협력상가의 운영 및 관리방식과 관련해서는

- 지자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입주 권장업종 선정, 사용조건 및 퇴거규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지자체 담당공무원, 지역대학 교수 등 전문가, 주민 등 총 15명 이내로 구성

- 또한, 상생협력상가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지속 가능한 영업활동을 위해 법률자문, 세무협의 등 기본적인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를 도시 재생사업을 하는 곳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며,

- “특히, 뉴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상생협력상가는 영세상인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가들을 위한 공간, 청년 창업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추진배경

-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영세 임차인들의 상가내몰림을 최소화하고,
 - 빈집, 빈 점포 등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청년,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 활동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 * (상생협력상가) 뉴딜사업지 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 또는 소유하여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시세의 80% 이하)로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

□ 주요내용

- (조성유형) 대상지 특성에 따라 빈집.빈점포를 활용하는 매입형(리모델링)과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건설형(신축)으로 구분
- (임대기준) 국토부는 입주대상, 기간, 임대료 등 세부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
 - (입주대상) 기존 소상공인, 창업기업(청년창업자, 1인 창조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배려대상(자활기업, 장애인 기업 등) 등을 선정
 - (임대기간 및 임대료) 임대기간이 6년을 초과하면, 임대료를 재산정할 수 있고,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 4년 추가연장 가능(최대10년)

구분(표준안)	임대 기간	임대료 상한
소상공인	계약기간은 2년부터, 최장 10년까지 보장(갱신) * 다만,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2년 이하도 가능	시세(감정가)의 80% 이하
창업기업		시세(감정가)의 50% 이하
사회적 경제조직		시세(감정가)의 80% 이하
사회배려대상		시세(감정가)의 70% 이하

- (재원조달)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주택도시기금, 지자체 자체 사업비, 공공기관 자금 등 다양한 재원 활용 가능

* 뉴딜 사업유형별 총 사업비의 5% 범위 내(지방비 매칭)로 한정

- (운영 및 관리) 상가운영(선정)위원회*를 통해 입주자 선정, 계약해지, 퇴거 등 상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상생협력상가를 관리

* 다만, 사업추진협의회 등 재생사업지역 내 유사한 의사결정기구로 대체가능

참고2

상생협력상가 조성 유형

- (조성 유형) 대상지 특성 및 사업의 추진 방식에 따라 ① 매입형(리모델링)과 ② 건설형(신축)으로 구분하여 조성
- (매입형) 쇠퇴 도심이나 상업지역 인근의 빈 점포, 빈집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거나, 기존 주택을 복합용도 또는 상업용으로 용도 전환하여 소규모 임대점포를 조성하는 방식

매입형	빈 점포 활용	용도 전환
조성 예시		
대상지	활력이 낮은 상업지역에 인접한 빈집, 쇠퇴한 도심 내 근린상가의 빈 점포 등	

- (건설형) 쇠퇴 도심이나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보유 토지 등을 활용하여 중·소규모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방식

건설형	복합시설
조성 예시	
대상지	도심 또는 임대료 상승지역 인근 유허부지(국·공유지 포함), 공공기관 보유 토지, 노후 청사·산단 등이 있는 지역

우리바다의 모든 해양수산생물 한눈에 본다

- 해수부, '2018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 발간... 총 13,356종 수록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우리바다에 서식하는 모든 해양수산생물의 정보를 담은 '2018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을 발간하였다.

최근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규제가 강화되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모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정보를 담은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을 발간하고 있다.

* 외국의 유전자원 이용 시 자원 제공국에 사전 승인을 받고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도 공유할 것을 규정한 국제 협약(2014. 10. 발효)

2017년 목록집에 수록된 해양수산생물종은 총 13,089종이었으나, 이번 '2018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에는 새롭게 발표된 논문 등을 토대로 신종과 미기록종을 갱신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분류체계 및 학명을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13,356종의 해양수산생물 정보를 수록하였다.

이 목록집은 분류군별 검색의 편의성과 휴대성을 고려하여 총 6권*으로 나누어 제작하고 생물분류체계**에 따라 목록을 정리하였다. 또한, 학명 색인(알파벳순)과 국명 색인(가나다순)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이용자가

더욱 쉽고 빠르게 원하는 해양수산생물종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7,621종의 실물자원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로마자^{***}로 별도 표기하였다.

* ① 해양척추동물 ② 해양무척추동물1 ③ 해양무척추동물2 ④ 해양원생생물
⑤ 해양식물 ⑥ 해양미생물

** 분류체계 상위부터 계-문-강-목-과-속-종 순으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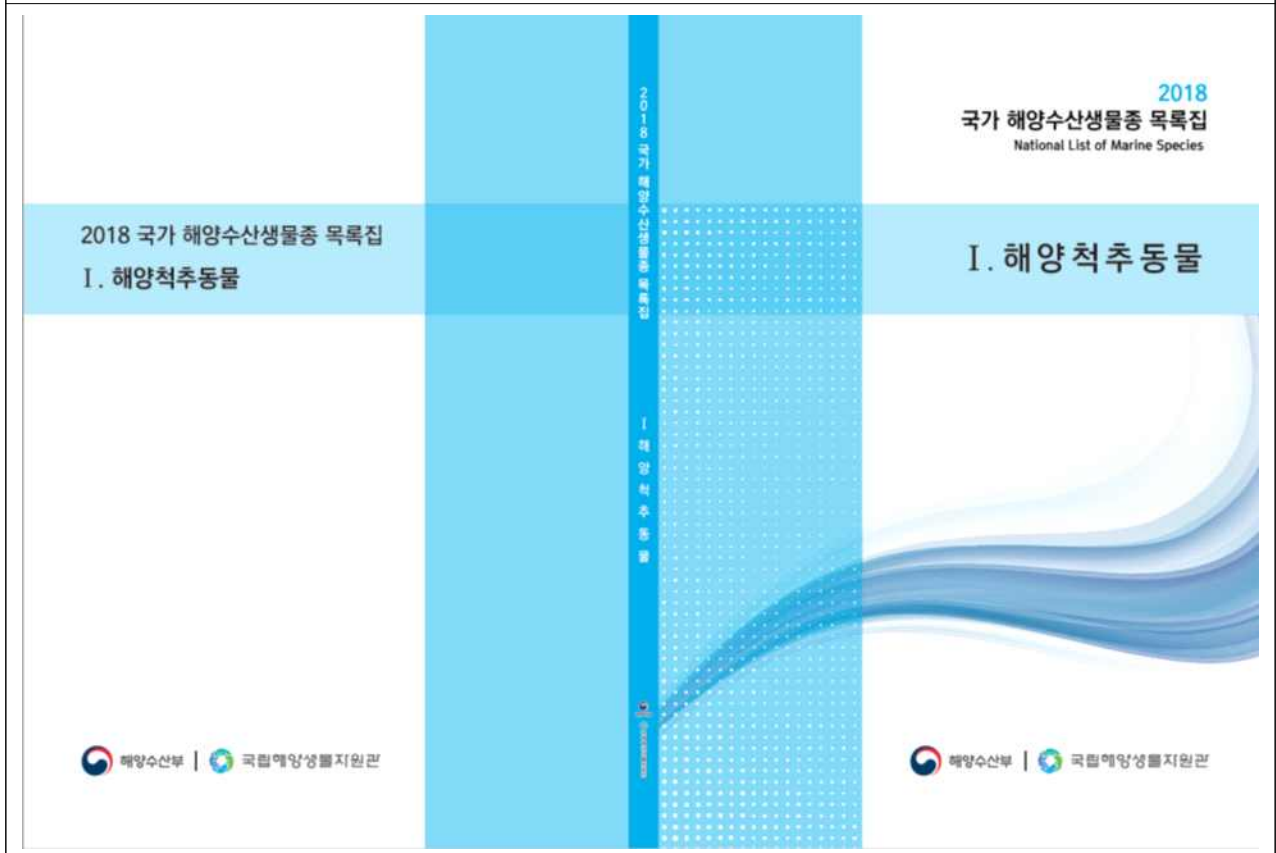
*** I: 국립해양생물자원관, II: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III: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발간한 ‘2018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을 국회 도서관과 관련 대학에 비치하고,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www.mbris.kr)에도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과장은 “이번 목록집 발간과 더불어, 앞으로도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권을 확립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 표지



2018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 중 I. 해양척추동물 편